| 고용노동부 | 보 도 자 료 | | 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 |
|---|---|---|---|
| 보도 일시 | 2022. 6. 28.(화) 12:00<br>2022. 6. 29.(수) 조간 | 배포 일시 | 2022. 6. 28.(화) 12:00 |
| 담당 부서 | 고용서비스정책관<br>고용지원실업급여과 | 책임자 | 과 장 이원주 (044-202-7368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박미희 (044-202-7371) |

# 7. 1.부터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촉진을 위한 방안을 시행합니다.

## - 수급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강화 -

□ 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는 「**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**」 지침을 마련하고 **'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**

○ 그간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**실업인정 방식**을 **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**하여 **운영**하고 있다.

- 모든 수급자는 전체 수급기간에 재취업활동을 4주에 1회 이상만 하고, 그 활동내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

- 대면 활동이 어렵고 고용 여건이 악화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의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가급적 자제하고 있다.

○ **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회복** 등에 따라 감염병 예방 중심의 **간소화된 실업인정을 정상화**하고, **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**하며, **본연의 취업지원기능을 회복**하기 위한 개선 방안(지침)을 마련했다.

□ 이번에 시행하는 지침의 **주요 내용**은

- **①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, 수급자별 특성*에 맞게 차별하여 적용, ②수급자 선별 관리를 통해 집중 취업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강화, ③허위·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**이며,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* 구직급여 수혜기간, 실업인정 차수, 연령, 재취업기간, 과거 수급이력 등

□ 첫째, **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**에 맞추어 **재취업활동의 횟수 및 범위**를 **다르게 적용**한다.

○ 현재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,

○ 앞으로는 **반복·장기수급자는 요건을 강화**하고, **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**한다.




○ 또한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**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, 단기 취업특강, 직업심리검사,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**도 재취업활동으로 **인정**하는 **횟수**를 **제한**한다.

- 이에 수급자가 더 많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회 또는 5회 이하로 제한해 오던 **워크넷 상의 구인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**한다.

□ 둘째, **취업지원을 원하는 수급자**에게는 구직의욕·능력, 취업 준비도에 따라 **맞춤별 재취업지원**을 하고, **반복·장기 수급자 등 강화된 재취업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**를 선별하여 **집중 관리**한다.

○ **모든 수급자**는 초기상담 등을 통해 취업 준비상태, 취업역량 등을 진단받고,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을 원할 경우 **고용서비스**(채용정보 제공, 알선, 훈련, 컨설팅 등)**를 받을 수 있다.**

○ **반복·장기수급자**에게는 **집중 취업알선**을 하고, **수급만료 전 최종 상담** 등을 통해 보다 **강화된 취업지원서비스**를 **제공**할 예정이다.

○ 아울러 **새정부 핵심 고용서비스 국정과제인 '구직자 도약 패키지'**와 연계한 **AI기반 직업역량진단시스템**(Job Care)을 **시범 적용**하여

- 희망직종의 고용시장 현황, 채용정보, 추천 훈련과정 등을 제공한다.

□ 셋째, 수급자의 **허위·형식적 구직활동**에 대한 **모니터링**을 강화한다.

○ 특히 **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한 수급자**에 대해서는 **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**하고,

- **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**하여, 정당한 사유가 없이 **면접 불참·취업거부** 등을 한 경우에는 엄중 경고,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등을 통해 **허위·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에 기여**할 것으로 보인다.

□ 현재 여전히 **재난안전법상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상위인 '심각' 단계**이며, **일상회복**에 따른 **정상화 초기임**을 고려하여 **제도 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며**

○ 이에 달라지는 실업인정 기준은 **7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**하고, 기존 수급자 중에서는 **장기수급자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**한다.

□ 이번 방안이 현장에 안착되고 실효성이 담보된 이후에는, 구직자 도약패키지와 본격적 연계 등 **재취업활동 지원**을 **더욱 강화**하고, 재취업촉진을 위한 **추가 조치사항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.**

○ 또한 [1]사중손실을 줄이면서 수급기간 단축에 초점들 둔 **조기재취업 수당 제도를 개선**하고, [2]**실업인정 기준을 강화**해 나가면서 한편으론 실업급여가 중요한 생계수단임을 참작하여 실업을 인정받지 못한 수급자에 대한 **급여 지급유예 등 방안**(고용보험법 개정)**도 함께 마련할 계획**이다.

□ 한편, 이번 시행 방안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('21.9.1.)된 '**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***'**의 이행 조치**이며, 애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려 했으나, **코로나 재유행 등을 감안하여 7월 1일 시행하게 된 것이다.**

**[참고] '고보기금 재정건전화 방안' 중 해당 부분 발췌**

**2 실업인정 제도 재정비**

○ **(실업인정 기준 재정비)** 코로나19 상황을 보아가며, **비대면서비스 등 일시 완화**된 **실업인정 기준***을 **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조정**

* 실업인정 전 회차 비대면 가능, 워크넷 구직활동에 대해 횟수 제한 없이 인정 등

- **허위·형식적 구직활동 사례를 유형화***하고 **관련 기준** 재정비

○ **(재취업지원 강화)** 구직급여 수혜자 **구직활동 지원 강화*** 등을 통해 수혜자에 대한 **실효성 있는 재취업지원 서비스 지원**

▲ 장기수혜자 및 직접일자리사업참여 반복자 등에 대한 구직활동 지도 강화
▲ 수혜자 유형에 따른 진로지도 강화 ▲적극적 훈련·전직 지원 등

□ **김영중 고용정책실장**은 "이번 제도 시행이 구직급여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**수급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하여, 허위·형식적 구직활동을 사전에 예방하고, 수급자 선별관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취업지원을** 하겠다"라고 밝혔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